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차 례

- 02.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 0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과 시행
- 06. 달라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1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 14. 환경성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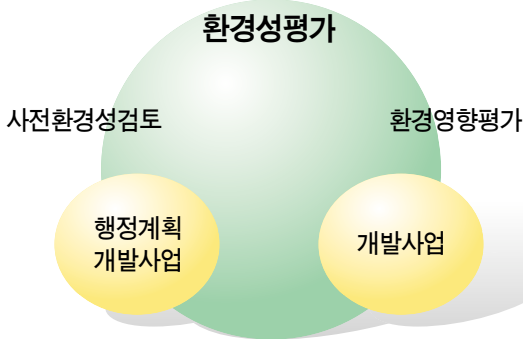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21세기에 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국토의 지속가능성 실현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122위(2005년 세계경제포럼발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함께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라는 국토환경관리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입니다.

- 환경부는 국토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77)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93)를 도입



-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반면,
-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보전용도지역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전 또는 인허가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장래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과 시행

■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시행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93. 1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 관한규정(총리훈령 제270호)”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 도입
- '99.12.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 근거마련('00.8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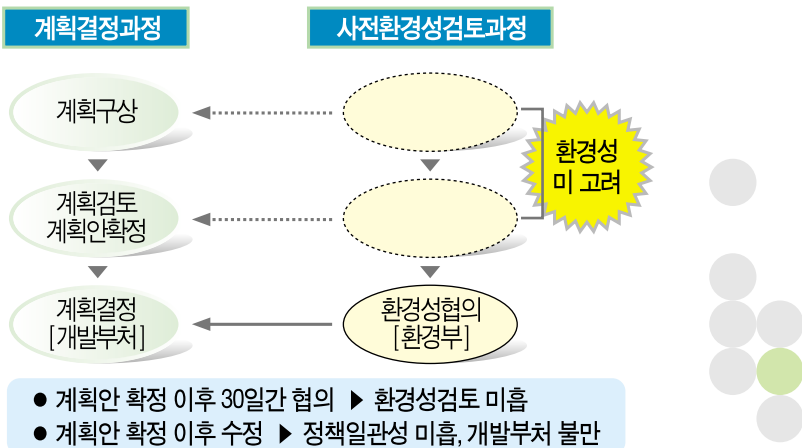


2000.8월 이후 현재까지 총 16,947건을 협의하였고, 이들 중 상수원 악영향, 자연환경훼손 및 생태계 단절,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등 입지·계획의 부적정을 사유로 835건(5%)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였습니다.

구분	계	'00	'01	'02	'03	'04	'05
협의건수	16,947	250	2,307	2,995	3,618	3,778	3,999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 90년대 후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환경적·사회적 이슈가 되자 사전 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00.8)하고 검토대상을 민간부문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였으나,
 - 검토대상이 협소하고 사회적 합의형성과정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시행단계에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 21세기 들어 새만금사업, 천성산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과 보전의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태 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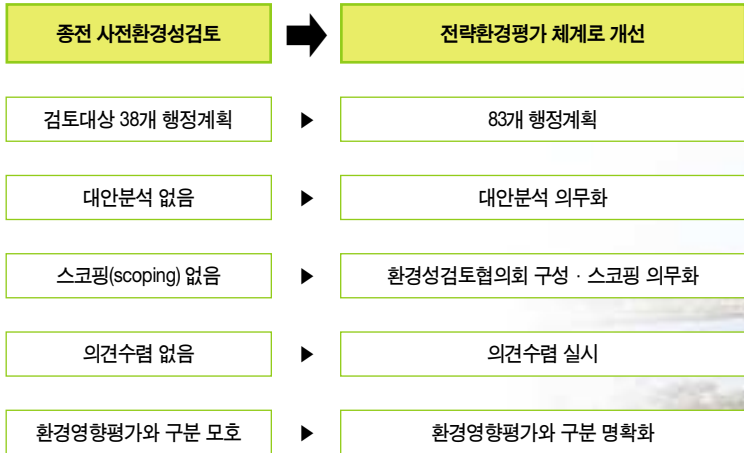


달라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전략환경평가체제로 개편

■ 보전과 개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개선, **전략환경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05.5.3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06.5.30일 시행령 개정)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시부터 대안설정과 분석을 통해 환경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였습니다.



*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 단계의 행정계획부터 환경영향을 사회경제적 영향과 함께 고려하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의 확대

- 기존 38개에 불과하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을 도로, 철도, 댐건설기본계획 등 그 간 환경갈등을 야기하였던 상위 행정계획을 포함하여 83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 대안설정 및 분석의 의무화

-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시, **대안**은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을 검토하도록 하고, 대안의 종류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수단, 규모, 수급, 입지, 시기와 순서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과 스코핑 실시

-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 작성단계에서부터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검토항목과 범위, 대안의 종류를 결정하는 **스코핑(scoping)**을 실시토록 하였고,
- **환경성검토협의회**는 계획수립기관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협의기관,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등으로 10인 내로 구성하고 다른 법령의 위원회가 동일한 구성인 경우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의견수렴 의무화

- 앞으로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람**(20일 이상) 및 **설명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공청회·토론회** 등의 방법은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계획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견수렴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시 의견수렴을 한 경우
다음 요건 충족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의견수렴 생략 가능

-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와 동일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협회의 완료한 날부터 3년 미경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당시의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
- 소각시설·폐기물매립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 달라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5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항목

- 계획수립 기관은 종전 구비서류에 **대안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추가하여 작성하고, 협의기관(환경부·지방환경관서)에 30부(CD 등 전산기억매체 1장 별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검토서 작성내용

-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사업계획
- 토지이용현황
-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전지역 분포
- 식생 등 생태적 특성, 개발현황,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대안설정 및 환경성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행정계획에 한함)**
-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30,000㎡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민감지역이 아닌 경우 사업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6 사전환경성검토의 재협의 등 신설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후 행정계획이 확대되면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재협의**·**사전협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 협의시 **제척**·**보전토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와 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는 **재협의**
- 10 내지 30% 미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 **재협의**는 협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을 재검토,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는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약식절차

7 사전환경성검토 중복방지 규정 신설

- 다른 행정계획에서 “계획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검토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중복검토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있는 행정계획(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제외한 별표 2) 중 동일한 범률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행정계획이 2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일련의 행정계획을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서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경과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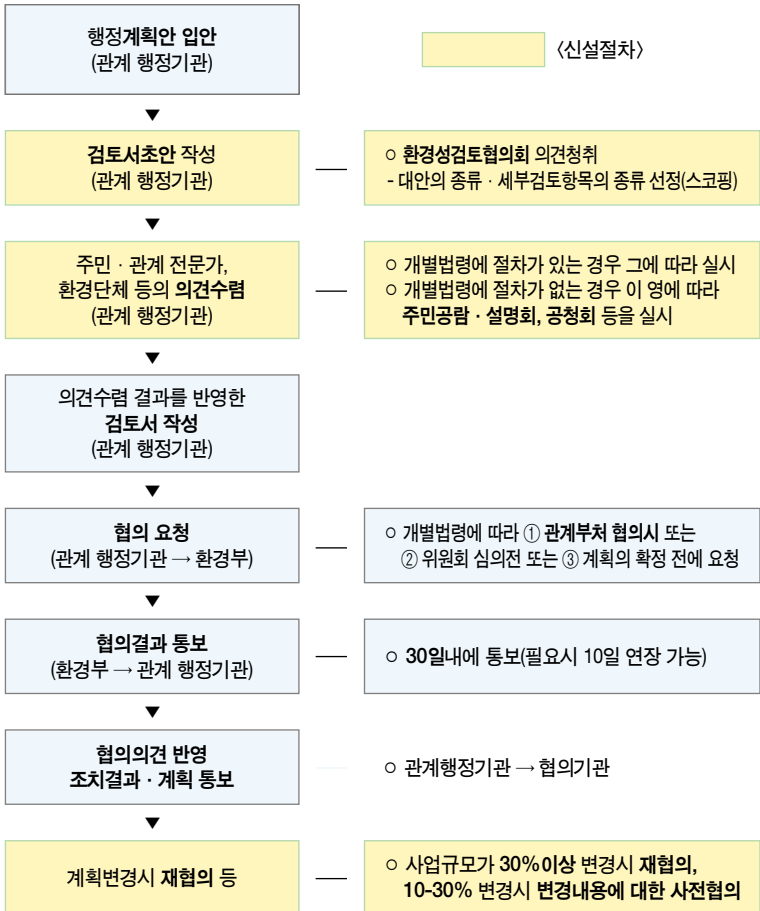
- 환경정책 기본법령 시행 당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위(용역계약, 지구지정 제안 등)가 있으면 이미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적용 예 : 신설된 의견수렴 절차는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적용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대한 적용 예 : 새로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시행 후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 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용 예 : 검토서 작성내용, 협의회 의견청취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부터 적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행정계획의 경우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허가·인가·승인신청	: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사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 관계행정기관 작성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음
협의 요청	: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 환경부
협의결과 통보	: 환경부 → 관계행정기관(30일~40일)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 관계행정기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이행상황 확인	: 환경부 → 관계행정기관



환경성평가 체계

- 전략환경평가 체계의 도입으로 개발관련 상위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개발사업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환경성평가체계가** 구축됨

평가대상	평가종류	평가항목(예시)
입지가 없는 행정계획 (시행령 별표3)	▶ 사전환경성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 계획의 일관성
입지를 결정하는 행정계획 (시행령 별표3을 제외한 별표2)	▶ 사전환경성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계획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 입지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개발사업 (19개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사전환경성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계획 단계에서 검토된 경우는 제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 (74개 사업)	▶ 환경영향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방안 - 기후 · 기상 · 동식물 등 23개 항목



❖ 개편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구 분	개정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주요기능	개발 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강구
협의시기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전, 개발사업 인·허가 전	행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대상사업	· 개발 관련 행정계획(17개 분야 83종) · 보존용도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19종) (행정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17개 분야 74종)
협의 요청기관	행정계획 수립(또는 승인)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평가서류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주민공람·설명회, 공청회 등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 사전환경성검토시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협의기간	30일 이내(10일 연장)	45일 이내(15일 연장)



